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운수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됨에 따라 검사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관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안 제15조)

: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 삭제

나.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안 별표6)

: 검사관 자격 기준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고졸학력 이상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6 중 검사관 자격기준을 학사학위에서 고졸학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서) ①(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u><신 설></u> 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제15조(사업계획서) ①(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u>가. 정관 1부</u> 나.~ 다.(현행과 같음) <u>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u> 2. (현행과 같음)

[별표 6]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

구분	자 격	직 무
책임 검사관	○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심리학 전공자는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검사결과 상담 및 교정교육 ○ 검사시행
선임 검사관	○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년 이상(심리학 전공자는 1년 이상) 검사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검사결과 상담 및 교정교육 ○ 검사시행
검사관 (검사보조)	○ <u>고졸학력</u> 이상 소지자로서 - <u>한국</u>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직무는 검사보조에 한한다.	○ 검사시행 및 교정교육 보조

주)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관이 책임검사관 직무를 수행한다.